

# 2022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한국임업진흥원장

## 1 시험일정

시행횟수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6회	2차	'22.02.14(월) 09:00 ~ '22.02.18(금) 18:00	원서 접수 시 공고	'22.03.19(토)	'22.04.08(금)	
7회	1차	'22.04.18(월) 09:00 ~ '22.04.22(금) 18:00		'22.06.04(토)	'22.06.24(금)	
	2차	'22.07.11(월) 09:00 ~ '22.07.15(금) 18:00		'22.08.20(토)	'22.09.16(금)	
8회	1차	'22.09.26(월) 09:00 ~ '22.09.30(금) 18:00		'22.10.29(토)	'22.11.18(금)	

※ 국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0일전 변경 공지)

## 2

## 시험과목

■ 시험과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2항 별표 1의2)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① 수목병리학 ② 수목해충학 ③ 수목생리학 ④ 산림토양학 ⑤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산불, 대기오염 등의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령	객관식 5지 택일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제2차 시험	①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논술형 및 단답형
	②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 시험시간, 시험방식 등은 원서접수 시 상세공지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는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표준목록’을 기준으로 함

## 3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산림보호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6, 산림청 고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관련

-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6, 별표1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2)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자격
  -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함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함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산림청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음

## 나. 결격사유(산림보호법 제21조의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음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산림보호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4항)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5

## 1차 시험 유예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함.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함
- ※ 단, 면제기간 만료일이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의 시작일을 포함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회차	합격일자	면제기간
제3회 1차	'20.08.17.	'20.08.17. ~ '22.08.16.
제4회 1차	'21.02.22.	'21.02.22. ~ '23.02.21.
제5회 1차	'21.08.08.	'21.08.08. ~ '23.08.07.
제6회 1차	'21.12.27.	'21.12.27. ~ '23.12.26.

※ 제3회 1차 시험 합격자는 '22년 제7회 2차 시험 까지 응시 가능

## 6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1) 제6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 제2차 : 2022. 02. 14(월) 09:00 ~ 02. 18(금) 18:00 [5일간]

## 2) 제7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 제1차 : 2022. 04. 18(월) 09:00 ~ 04. 22(금) 18:00 [5일간]  
○ 제2차 : 2022. 07. 11(월) 09:00 ~ 07. 15(금) 18:00 [5일간]

## 3)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 제1차 : 2022. 09. 26(월) 09:00 ~ 09. 30(금) 18:00 [5일간]  
※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나. 접수방법

### 1) 온라인 접수

-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접수
- 응시자격 증빙 서류와 양성교육 교육이수증명서를 제1차 시험 원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0cm × 4.0cm)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2)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시행기관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지불이 완료되어야 접수한 것으로 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자격 증빙서류와 양성교육 교육이수증명서를 원서접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원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함(원서 출력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같이 출력하여 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3)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 응시자격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 응시 불가함

#### 〈응시자격 증빙서류〉

##### ■ 필수 증빙서류

- ① 양성기관 교육이수증명서<sup>1)</sup> + ② 응시자격요건 1-7(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 응시자격 요건별 증빙서류 서식(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1. 응시자격요건(1) : 해당 전공 석사, 박사 학위증<sup>2)</sup>
2. 응시자격요건(2) : 해당 전공 학사 + 경력증명서<sup>3)</sup>(경력 1년 이상)
3. 응시자격요건(3) : 해당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경력 3년 이상)
4. 응시자격요건(4)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국가전문자격증(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국가공인민간자격증(수목보호기술자)
5. 응시자격요건(5) : 해당 국가기술자격(기능사) + 경력증명서(경력 3년 이상)
6. 응시자격요건(6) : 수목치료기술자 + 경력증명서(경력 4년 이상)
7. 응시자격요건(7)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경력증명서(경력 5년 이상)

1) 교육이수증명서[별첨 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1호 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증명서, 교육기관 자체 수료증은 접수 불가

2)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경력증명서는 산림청고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르며,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별첨 2]

※ 모든 서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다른 없음을 확인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9조에 의해 확인한 경우 등 공증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4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라.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더 낸 경우 : 더 낸 금액 전부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수험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받은 경우 :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시험일이 금지기간에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 환불신청은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취소'를 통해 가능(\*유선·방문 환불신청 불가)

####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 출력 기간에 출력 또는 발급된 수험표를 시험당일 지참

#### 바.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 기재사항 수정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변경, 재접수 가능
- 「접수기간 종료 후」 시행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

#### 사. 시행기관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둔산빌딩 5층	35209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	1600-3248, #4 (나무의사 자격시험)

## 7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가. 가답안 공개

-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을 통해 공개
- 가답안은 1차 시험에 한하여 공개

### 나. 의견제시 접수기간

- 제7회 1차 : '22. 06. 04(토) 17:00 ~ 06. 08(수) 18:00, 5일간
- 제8회 1차 : '22. 10. 29(토) 17:00 ~ 11. 02(수) 18:00, 5일간

### 다. 의견제시 방법

-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을 통해 신청

라. 가답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개별회신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 8 장애인 등 시험약자 응시편의 제공

-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희망 편의제공 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3)

## 가. 합격자발표

## 1) 제6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 제2차 시험 : 2022. 04. 08(금) 09:00

## 2) 제7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 제1차 시험 : 2022. 06. 24(금) 09:00
- 제2차 시험 : 2022. 09. 16(금) 09:00

## 3)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 제1차 시험 : 2022. 11. 18(금) 09:00

## 4) 발표방법

-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 [30일간]

## 나.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신청서[별첨 4]를 작성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  
-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 공지사항에 게재된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신청(온라인, 유선, 방문)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7,000원

###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군인에 한함, 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단,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 후 3일 이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격시험 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함(미 확인자는 시험 무효로 처리)
- 3) 답안카드(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됩니다.
-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벨)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임.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별첨 5]로 간주합니다.

-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7)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을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 탐지기 수색 등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보관) 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사전 공지된 시험시간 경과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 배변 장애 편의 제공은 ‘별첨 3’을 참고
-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11) 1차 시험 종료 후 본인 문제지를 직접 가지고 갈 수 있으며, 시험 종료 시간 이전에는 시험실 외부로 문제지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 12) 가답안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 2차 시험 문제와 모범답안(해설서)는 비공개 사항으로 문제지를 외부로 가지고 갈 수 없으며,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14) 이의제기는 의견제시 접수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15)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6)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 합니다.
- 17)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 시험 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위반 및 훼손시 법적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

###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를 확인하여 유형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 3)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전산자동 판독불가 등)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불완전한 마킹,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 수험번호, 시험지 유형(A,B형) 등 수험자 확인란의 오기입 및 마킹 사항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

### 제2차 서술형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
-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 5) 제2차 시험 채점은 과정(논술형과 실기시험)별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미응시 과정은 0점 처리됩니다.

### 제2차 실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 인적사항과 답안 작성시는 검정색 필기구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3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2) 실기시험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와 공지한 시험요령 안내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3) 시험이 종료되면 작업을 즉시 멈추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5) 지급한 재료가 있을 경우 수험 시작 전에 확인하여 재료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험이 시작된 후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장비(pc, 노트북, 현미경 등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를 사용시 장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감독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나무의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험 시행·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을 참조하시거나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1600-32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시 수험자 안내 사항을 추가 공지하여 안내
  - 1)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 2) 국가 위기단계,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발생시



# [별첨 1]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나무의사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 [ ] 수목치료기술자

학 습 자	이 수 번 호	기관명(요약)-년도-일련번호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교 육 기 간	20 . . . . ~ 20 . . . . ( 시간)		
	총 교 육 시 간 (실 교육시간)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성기관의 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80g/㎡)



## [별첨 3] 장애인 등 응시편의 사항

### 나무의사 자격시험 장애인 등 시험약자 응시편의 사항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희망 편의제공 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편의제공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li> <li>3. 임산부, 질병, 사고 재해, 기타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li> </ol>
편의제공 증빙 (서류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1부</li> <li>2.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li> <li>3. 의사 진단서 사본 1부(임산부, 배변장애 등의 진단서는 시험응시에 불편사항 및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li> </ol>
편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시간은 편의제공 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따라 최대 1.7배 연장할 수 있음(이 경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li> <li>2. 편의제공 대상자가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함</li> <li>3. 편의제공 대상자가 도우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응시자가 장애로 제한받는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감독관)를 배치함</li> <li>4.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가 수화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수화 통역사를 배치함(수화 통역의 범위는 방송, 시험안내 등에 한함)</li> <li>5. 편의제공 대상자에게는 출입, 화장실 이용(배변장애 등), 냉난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험실을 배정함</li> </ol>

## [별첨 4]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8. 6. 28.>

### [ ] 나무의사 [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격 취득 사항	[ ] 있음 [ ] 없음		
	종목	합격일	
경력사항	[ ] 경력 있음 [ ] 경력 없음		
	근무기간		
	근무처명(사업체)	전화번호	
	근무처 소재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자격증 발급기관 귀하

※ 자격증 발급기관은 「산림보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증명사진 1장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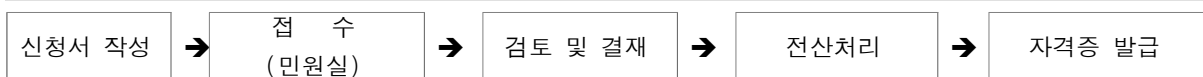
1.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자격취득사항 및 경력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입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아래 대리발급 신청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발급 신청

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5] 부정행위 처리

## 수험자 부정행위 처리

구 분	내 용
<b>부정 행위자 처리</b>	『부정행위자는 법 제21조의8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b>부정 행위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사람</li> <li>2.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을 교환하는 사람</li> <li>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엿보거나 답안을 가르쳐 주는 사람</li> <li>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 등을 작성하는 사람</li> <li>5.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사람</li> <li>6.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사람</li> <li>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사람(양 당사자 모두 부정행위)</li> <li>8.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사람</li> <li>9.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을 휴대·사용하는 사람</li> <li>10.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람</li> <li>11. 시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시험장내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는 사람</li> <li>12. 시험종료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문답지 제출에 불응하는 사람</li> <li>13. 시험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li> <li>14.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사람</li> </ol>
<b>사후 적발 처리</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li> <li>2.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지</li> </ol>